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대표 발의: 차 해 영 의원)

의안 번호	26-9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: 2026. 8. 21.

발 의 자: 차해영, 배동수, 허디모데,
최영섭, 김해진, 채종민,
장정희, 남해석, 강수영,
최은하 의원(10인)

1. 제안이유

-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는 국내외 다수의 참가자와 방문객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, 행사 기간 중 안전관리, 교통, 보건·위생, 환경정비, 관광안내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- 마포구는 서울월드컵경기장과 홍대 관광특구 등 대규모 인원의 집결과 이동이 예상되는 주요 문화·관광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, 세계청년대회 개최에 따른 인파관리와 교통혼잡 대응, 참가자 편의 제공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관내 개최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, 공공시설 이용 지원, 안전·교통·환경·관광 분야의 지원사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,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문화교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세계청년대회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- 나.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적용관계를 규정함(안 제4조).
- 다. 안전관리, 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·위생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.
- 라. 공공시설 제공, 안전관리, 환경정비, 참가자 편의, 자원봉사, 국제 문화교류, 관광 및 지역상권 홍보, 구민 참여 활성화 등 지원사업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6조).
- 마.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).
- 바.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불임
- 나. 예산조치: 불임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- 다. 소관부서: 총무과
- 라. 입법예고: 2026. 8. 24. ~ 8. 28.(예정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마포구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, 마포구민의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세계청년대회”란 2027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청년 행사인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(World Youth Day)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관내 유치 및 개최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하고,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)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청년대회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세계청년대회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
2.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
3. 교통·숙박·급식·의료·관광·위생 등 행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①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공연장·체육시설 등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의 제공 및 이용 지원
2. 인파관리, 질서유지, 치안·소방·재난안전·응급의료 및 보건위생 등 안전관리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연계
3. 행사장 및 주요 이동경로 주변의 환경정비와 도시경관 개선
4.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·숙박·급식 등 편의 제공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
5. 자원봉사자 모집, 교육 및 활동 지원
6. 국제문화교류 및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
7. 마포구 관광자원 및 지역상권 홍보, 다국어 관광안내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
8.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및 문화의식 제고 사업
9. 그 밖에 세계청년대회의 안전하고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구 소관 공공시설 또는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, 서울마포경찰서, 마포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8조(지역경제 활성화 기여) 구청장은 세계청년대회가 지역상권 및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【관 계 법 령】

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6. 10. 29.] [법률 제21587호, 2026. 4. 28., 제정]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,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.

제6조(국제문화행사의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연장,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
2. 교통·통신·전력·용수·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
3. 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
4.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·보수
5. 치안·소방·재난안전·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
6.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
7.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

②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민간 참여 활성화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6조(지원사업)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, 안전관리, 환경정비, 교통·숙박·급식 등 편의 제공, 자원봉사, 문화·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의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용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현재 서울시의 세계청년대회 세부 지원계획 및 자치구별 역할·재원 분담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업의 범위와 지원 규모를 현 단계에서 특정하기 어려워 정확한 비용추계가 곤란
- 향후 서울시의 세부 지원계획 및 자치구별 역할·재원분담 기준이 확정된 후 우리 구 세부사업 및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할 예정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관리국 총무과 오미현
연 락 처	02-3153-8202